第305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國會事務處

2012年2月9日(木) 午後 2時

議事日程

- 1. 제30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 3. 국무총리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 4. 헌법재판소 재판관(조용환) 선출안
- 5.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 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7.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8.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附議된案件

О	의원(선경식) 선서 및 인사1
1.	제30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2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황우여·김진표 의원 외 261인 제출) ···································
3.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황우여·김진표 의원 외 261인 제출) ·········2
4.	헌법재판소 재판관(조용환) 선출안(의장 제의)3
5.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
	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4
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4
8	정치 · 외교 · 통일 · 안보에 관한 질문

(14시2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한공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o 의원(선경식) 선서 및 인사

(14시 22분)

○**의장직무대리 정의화**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 에 지난 1월 26일자로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하신 선경식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경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 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일어나 주시 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선경식 의원님께서 선서 를 하실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냥 서 계시면 되 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식 의원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 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 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2월 9일 국회의원 선경식

이의장직무대리 정의화 수고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선경식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선경식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저는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선 경식입니다.

18대 국회에 늦게나마 합류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의 소회를 몇 마디 밝히고자 합니다.

창조한국당은 사람이 희망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창당되었으며 일자리 강국, 중소기업 강국, 교육 강국 등 3대 강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창조한국당은 제3의 길을 표방하고 있으며 제3의 길은 보수적인 제1의 길과도 다르며 진보적인 제2의 길과도 확연히 다릅니다. 또한 창조한국당의 생각은, 즉 가치와 정책은 기존 정당의 그것과 확연히 다릅니다.

창조한국당은 비록 의석수 등 외형 면에서는 작을지라도 가치와 정책 등 내면적인 면에서는 작고 힘 있는 강소정당임을 자부합니다.

창조한국당은 과거에 연연하는 정당도 아니요 현실에 안주하는 정당도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 하고 미래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 치정당입니다.

따라서 창조한국당을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원 오브 뎀(one of them), 군소정당이 아니고 온리 원(only one), 유일한 정당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창조한국당과 저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대한민국을 재창조하는 데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26분)

○**의장직무대리 정의화**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

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5회국회(임시회) 회기를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황우여· 김진표 의원 외 261인 제출)
- 3.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황우여·김진표 의원 외 261인 제출) 이의장직무대리 정의화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 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명규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 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012년 2월 9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정 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 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 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의 출석을 요 구하며,

둘째, 2012년 2월 10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 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의화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 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국무총리 · 국무위원 및 정부 위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헌법재판소 재판관(조용환) 선출안(의장 제의) (14시29분)

○의장직무대리 정의화 의사일정 제4항 헌법재 판소 재판관(조용환) 선출안을 상정합니다.

공직후보자 조용환에 대한 재산 및 병역신고 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의 단말기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재판관(조용환)선출에관한인 사청문특별위원회의 전현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 사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조용환)선출에관한인사청문 특별위원장대리 전현희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자(조용환)인사청문위원 회의 민주당 간사 전현희 의원입니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조용환) 선출안에 대 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 다.

헌법재판소재판관(조용환)선출에관한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자 조용환 에 대한 인사청문을 거친 결과 우선 후보자가 헌 법재판소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 어서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 부를 중심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구성의 역할과 헌법적인 쟁점과 각종 사회적 현안 등에 관한 후보자의 종합적인 식견과 후보자의 도덕성·재산 등의 개인적 신상 에 관한 사항을 철저한 검증을 거쳤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내용과 후보자의 답변 그 리고 서면질의 답변 등을 종합한 내용과 근거를 가지고 인사청문회에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조 용환에 대하여 청문위원 사이에 그 의견이 나뉘 었지만 그 의견을 그대로 표시하고 인사청문특별 위원회의 합의로 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 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표결은 공직후보자의 정당 추천 선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표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나름의 입장과 판단을 하시고 계시 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한 표 행사가 한국 정 당정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민을 해 주시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의원 님 여러분들의 귀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경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직무대리 정의화** 전현희 의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12조에 따라서 전자 무기 명투표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2항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지명 하겠습니다.

강명순 의원, 김소남 의원, 강성종 의원, 박선 영 의원, 이상 네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 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이 투표 방법을 설명하고 난 뒤에 그 동안에는 늘 호명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호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신 대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국장 한공식**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 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 하셔서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 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은 '가'를, 반 대하는 분은 '부'를, 기권하는 분은 '기권'을 선택 하시면 됩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우 측 투표함 상단에 출력되는 투표결과지를 확인하 신 후 투표용지의 투입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는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의화** 그러면 각자 투표해 주

시기 바랍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34분 투표개시)

(「여기 투표 다 끝났어요, 부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빨리 좀 끝냅시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진짜」하는 의원 있음)

지금 몇 분이 아마 뛰어오고 계신 모양인 것 같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하신 분들 많은데 뭐 하러 기다립니까?」하는 의원 있음)

조금만 참아 주세요.

(「아니, 어디 있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요?」하는 의원 있음)

제가 알아서 판단하는데 조금만, 맡겨 주세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05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조용환)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입니다.

총 투표수 252표 중 가 115표, 부 129표, 기권 8표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조용환) 선출안은 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5시06분)

○의장직무대리 정의화 의사일정 제5항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 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학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 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김학재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김학재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이두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건의 법률안은 국민의 신뢰 회복과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하여 국민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특별검사에 의한 특별수사가 가능하도록 1999년부터 모두 8차에 걸쳐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뒷받침을 한 우리 국회의 입법 방향에 부합하므로타당성을 인정하였고, 2건의 내용을 통합한 2011. 10. 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 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관련 한나 라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정치인이나 단체 등 제3 자 개입 의혹 등 4개 항으로 정하였습니다.

특별검사의 활동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그리고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이 가능토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직무대리 정의화** 김학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 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83인, 반대 9인, 기권 9인으로서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5시10분)

○의장직무대리 정의화 의사일정 제6항 방송광 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 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윤선 의원님 나 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대리 조윤선** 존경 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윤선 의원입니 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모두 8 개의 방송광고 관련 법안과 청원을 통합・심사한 결과, 이를 조정 ·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방 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 각각의 법률안과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 록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방송채널사 용사업자는 미디어렙에 방송광고를 의무위탁하도 록 했습니다.

다만, 종합편성방송채널사업자의 경우에는 승 인일로부터 3년 후에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 니다.

둘째, KBS·EBS 및 MBC의 방송광고는 한국 방송광고진흥공사에 위탁하여 판매하도록 하였습 니다.

셋째, 소유 제한과 관련해서는 누구든지 광고 판매대행자의 주식의 4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지주회사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 록 하였습니다.

넷째, 중소방송의 지원을 위해서 광고판매대행 자는 그 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와 결합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율은 지 난 5년간의 평균 결합판매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 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직무대리 정의화 조윤선 의원 수고하셨습 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허원제 의원 외에 173인과 전혜숙 의원 외 34인으로부터 각각 수정안이 발 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원제 의원님 나오셔서 허원제 의원 외 173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 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제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부산진갑 출 신 새누리당 허원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새누리당 의원 173인이 공 동 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제안 내용입니다.

법률안(대안)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일반일간 신문과 특수관계에 있는 방송사업자까지도 일반 일간신문과 동일하게 소유가 10%로 제한되는 것 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상 오해의 소지 가 없도록 관련 내용을 명확히 수정하려는 것입 니다.

따라서 법률안(대안) 제13조제3항 중 "일반일간 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를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방송사업자를 제 외한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수정한 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직무대리 정의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전혜숙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숙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은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 자본으 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언론이 정치권의 압력과 특히 자본의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언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 습니다.

건전한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민주 언론의 발전을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소신껏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 드리면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제정 입법으로서 제안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대안)은 방송광고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지난 4년여의 진통 끝에 제출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종편 채널의 등장과 각 방송사의 정 파적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 니다.

특히 '미디어렙법'이라고 불리는 등 법률이 최초 법안 제정의 취지, 목적에 어긋나는 조항들을 많이 담고 있으므로 본 의원은 수정안의 제안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첫째, 본 수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법 안의 부칙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적용 특례 규정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미디어렙법에는 종편의 적용을 승인일로부터 3년간 적용 유예토 록 되어 있으나 이는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동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는 종편 채널 선정일 로부터 3년 또는 개국일로부터 2년 동안 적용을 유예한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명되지도 않은 여야 합의안의 문구만을 핑계 삼아 본질을 호도 하고 승인일로부터 3년을 고집한 것입니다.

이처럼 승인일로부터 3년이라는 조항이 확정될 경우 각 종편 채널 간 적용 유예 시점이 서로 달라 동일 날짜에 개국한 4개의 종편 채널 사이에도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차별이라는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자본금을 제때에 마련하지 못해 다른 사업자들보다 늦게 승인장을 받은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종편 채널의 미디어렙법 적용 유예 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생 각하며, 수정안에는 개국일로부터 2년간 적용을 유예토록 명시했습니다.

둘째는 1공영 1민영제의 취지를 살린 미디어렙법 수의 최소화를 위한 선언적 규정과 방송사업

자의 소유 지분 제한을 담았습니다.

수정안은 법 제3조3항 및 제6조3항을 통해 민영립 허가권자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방송시장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민영 렙을 허가하도록 하는 선언적 의무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의 40% 지분 소유 허용 시 실질적 1사 1렙이 되어 직접 영업에 버금가는 폐단이 유발될 것이므로 방송사업자의 지분 소유를 최소화하여 1개의 민영 렙에 다수의 방송사업자가 참여, 주주 간 다소 견제와 균형을 유도하여 렙이 특정 방송사업자의 광고국화 내지 편중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별 지분 소유를 보다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방송사업자가 1개의 렙을 갖게 되는 1사 1렙은 다음과 같은 엄청난 폐단이 야기됩니다.

첫째, 방송사와 광고주 간의 유착이 야기될 것 이고.

둘째는 취재 기자가 광고 영업에 나서는 등 기자의 광고 영업 사원화의 폐단이 촉발될 것입니다.

셋째는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상실하고 영리 목적의 상업주의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처럼 1사 1렙이 가져오게 될 폐단을 막고 건전한 미디어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의 1인 지분 소유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그램 제작·편성과 광고의 분리라는 미디어렙법 제정 취지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정안을 통해 방송사업자 1 인의 최대 소유 지분을 20% 이하로 하고, 전체 방송사업자가 소유하는 지분의 합 역시 해당 방 송광고판매대행자의 전체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광고취약 중소방송사 지원을 위해 방송 광고판매대행자들이 직전 회계연도 5년 동안 지 상파 광고와 연계 판매한 금액의 평균비율 이상을 지원토록 법정 의무화하였습니다.

제출된 대안에도 지원규정이 있으나 내용상 차이점은, 대안은 '광고연계판매'에만 방점을 두고 있으나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는 광고연계판매뿐만 아니라 중소방송사의 '전파료' 및 '자체판매'에 대한 지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 자와 방송 프로그램의 전송 및 수입배분 계약을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체결할 것을 의

.

무화했으며 방법, 절차 및 조건에 대해서는 방송 통신위가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마련토록 하였습 니다.

넷째는 동종미디어 간 결합판매를 금지했습니 다.

전체 방송광고시장에서 지상파계열의 광고비중은 약 75%이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미디어 간 결합판매가 계속될 경우 힘없는 중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고사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정안에는 동종미디어 간 결합판매를 금지토록 했습니다.

다섯째, 동법 시행 후 미디어렙법이 신설되기 까지 현재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광고판매를 대행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 시행 후 시행령 마련을 통한 실질적 민영렙출범까지는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간 동안 방송사업자가 직접영업을하도록 허용하면 프로그램 제작·편성과 광고의분리, 방송사업자의 직접영업 배제를 목적으로하는 미디어렙법 제정의 취지는 훼손되고 맙니다. 또한 광고취약 중소방송, 즉 지역방송 및 종교방송에 대한 지원 역시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디어렙법 출범 전까지 공백기간에는 그동안 지상파방송의 광고 판매를 대행해 온 한 국방송광고공사에서 수행함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MBC에 대해서는 공영렙에 의한 의무위 탁판매를 이 법 시행 후 2년으로 제한하였습니 다. 이후부터는 MBC는 공영이든 민영이든 선택 하여 광고방송을 위탁판매 할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173인 수정안을 다 냈는데 여러분들 양식에 맡기겠습니다.

정말 우리 광고시장과 방송의 공영성·독립성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직무대리 정의화** 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그 래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윤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주도 서귀포시 지역구 민주통합당 김재윤입 니다. 먼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앞서서 제가 헌법 재판소 조용환 재판관 선출안 부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누리당이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야당을 짓밟고 국민의 욕구를 짓밟고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는 새누리당이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조용환재판관 부결안은 부메랑이 되어서 한나라당의 심장에 박힐 것입니다.

헌법재판관은 특정 세력에, 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특정 세력 중심으로만 해석되지 않기 위해서 야당 추천 인사를 여당이 받아 주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판사·검사만이 헌법재판관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변호사를 추천하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당의 추천을 묵살하고 힘의 논리로 다수당이 여론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국민 의 요구를 무시하게 된다면 한나라당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대 선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부결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나라당 의원님들은 가슴 깊이 되새기 기 바랍니다.

미디어렙법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당은 힘의 논리로, 다수당의 논리로 일 방적으로 미디어렙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던 것입니다. 프로그램 제작·편성과 광고방송, 반드시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 까? 그리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으로 방 송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마땅합니 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어떠했습니까? 오직 조중동 방송으로 이름 지어지는 종합편성채널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민주당을 압박하고 그리고 언론, 시민사회단체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미 문방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을 당연히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수정안을 내서 어떻게 고치려는 것입니까?

한나라당은 수적 우위를 내세워서 이렇게 민심을 외면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훼손하는 것은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누리당이 내세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방송·지역방송 지원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누리당은 다수라는 수적 우세만을 내세우면서 종합편성채널 편들기에만 급급한 나 머지 미디어렙법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주당은 솔로몬의 판결에서 생모의 심정으로 눈물을 머금고 양보 또 양보를 하면서 아이의 손을 놓는 심정으로 미디어렙법 협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편성채널에 관한 한 유예할 수 있는 조항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 유예가 승인일로부터 3년이라는 조항으로 한나라당이 우기면서 결국은 채널A와 매경의 MBN은 4월 20일, 5월 6일, 조선TV는 그리고 또 JTBC는 3월 30일, 이렇게 유예기간도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방송의 공공성·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나라당, 새누리당의 수정안은 반대하시고 그리고 전혜숙 의원님 안은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의화 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아주 정확하게 다 쓰셨습니다.

다음은 안형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환 의원** 서울 금천구 출신 안형환 의원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대한 법률안(대안) 수 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인데 느닷없이 존경하는 김 재윤 의원께서 직전에 있었던 조용환 헌법재판관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 인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인 물을 추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편파 적일 수 있다고 인식되는, 또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생각되는 그런 인물을 추천함으로써 이 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민주당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대한 법률안(대안) 수정안이 또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미디어렙 법안은 그동안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여야 합의안이 나 왔습니다. 여야 6인소위에서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바로 이것이 합의문입니다. 이 합의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률안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문방위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전체회의에서도 모두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당시에 KBS 수신료 문제가 걸려 가지고 이것이저희 한나라당, 여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었습니다.

법률안 자체에 대해서는 그 당시 민주당의 문 방위원들도 모두 합의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상임위 본안이었지요.

그런데 나중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문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허원제 의원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일간신문과 특수관계에 있는 방송사업자까지도 일간신문과 동일하게 소유가 10%로 제한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즉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구 수정을 위해서 허원제 의원과 173인이 수정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본안의 내용은 여야가 다 합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틈을 노리고 또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수정안 자체는 너무나 불합리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미디어텝의 최대 주주의 소유지분을 여야는 이미 40%로 합의해 가지고 원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은 20%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사실 언론의 정치적 독립, 공정성은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반대하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공공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방송사, 미디어렙회사보다는 방송사가 더 공공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그 방송사업자에게도 방송법은 최대 주주지분을 4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낮춰서 미디어렙을 20%로 줄이겠다는 것은 굉장히 법률적, 과도한 입법입니다.

사실 민영 미디어렙을 책임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소유지분이 인정이 되어야됩니다. 게다가 방송과 광고 간의 공정성 확보는 미디어렙법을 통한 규제가 아니라 그 심의 과정에서 내용 심의, 방송 평가, 재허가 등 다양한 사회적·제도적인 견제장치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치적 독립을 이유로 과도한 입법을, 그것도 여야 합의안을 깨 가면서까지 그 틈을 노려서 내밀고 나온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역방송의 총 광고 매출을 입법적으로 보장한다. 이것도 과도한 입법입니다. 현재 민주 당은 지역방송의 총 광고 매출을 우리 법으로 보 장해서 최소한 먹고 살게 됐다 이야기인데. 사실 지역방송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전을 원치 않 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서는 이미 자체 미디어렙법 안에 충분히 마련되 어 있습니다. 지역방송에 대한 전체 광고 매출을 보장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위헌의 소지가 있는 과도한 입법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안을 자구 수정 때 문에 저희들이 고치는 사이에 새로운, 제가 보기 에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법안을 내밀고 또 그것을 찬성을 요 구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 합의가 모처럼 이루어졌습니다. 미디어렙 관련해서는 6인 소위, 법안심사소위, 방통위에서 모두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법안이 있습니다. 그 법안의 자구 수정 때문에 우리 허원제 의원이 대 안에 대한 그 수정안을 냈습니다. 이 허원제 의 원의 대안을 찬성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의화 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통상 동일 조항에 대 해서 복수의 수정안이 제출될 경우에는 먼저 표 결한 수정안이 가결이 되면 나머지 수정안과 원 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2개의 수정안의 경우에 는 각각 서로 다른 조항에 대한 수정 내용을 담 고 있기 때문에 먼저 표결하는 수정안이 가결되 더라도 나머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서 나중에 제출된 전혜숙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수정안부 터 먼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숙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 행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투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62인, 반대 146인, 기권 13 인으로서 전혜숙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방송광 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허원제 의원 외 173인이 발의한 수정안 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150인, 반대 61인, 기권 12 인으로서 허원제 의원 외 173인이 발의한 방송광 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허원제 의원 외 173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 되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 안설명한 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대 안)은, 수정한 부분은 허원제 의원 외 173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방 송통신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는 국회법 제 97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에 따라 서 상정을 보류하겠습니다.

8.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15시37분)

○**의장직무대리 정의화** 의사일정 제8항 정치ㆍ 외교 · 통일 · 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서대문갑 출신의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국무총리 나오시면 자리가 정리되면 시작하도 록 하겠습니다.

총리와 국무위원이 나오실 때까지 조금 기다리 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서대문갑 출신의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정의화 의장직무대리, 홍재형 부의장과 사회교대) 〇**이성헌 의원**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서대문갑 출신 새누리당 이성헌 의원입니다. 18대 국회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일처럼 생생한데 어느덧 18대 국회의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18대 국회 임기를 시작하면서 다른 선 배·동료 의원님들처럼 저도 초심불망을 다짐했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국민의 마음을 읽고 그 뜻에 맞게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정치권을 향한 국민 들의 차가운 눈길만이 가득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질수록 정치도 빈곤해집 니다.

돌이켜 보면 저 역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누구와도 한마음이 돼야 함을 망각해왔습니다.

국민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와 우리만을 생각한 점, 불화와 정쟁으로 허송세월한 점,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활짝 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면서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대정부질문을 했으면 하는 내용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소통 부재, 청년실업, 물가대란, 전세난, 등록금 문제 등등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많은 고통을 안고 살아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MB 정부 지난 4년을 돌아보면 국민의 평가는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황식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MB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 전세난, 등록금 문제 등 서민생활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대해서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B 정부는 나름대로 금융위기·재정위기 속에서 경제 살리기에 노력을 하고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경제 성장의 효과가 서민층에 제대로 미치지 못해서 국민들이 대단히 평가를 높게 하지는 않는 그런 상태다, 낮

게 평가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〇이성헌 의원 지금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사상 최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냉소적인 평가는 서민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동안 정부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할 정도로 우호적이던 대기업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친 대기업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나온 그 보고를 보게 되면 이명박 정부 4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규제 개혁과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는데 서민정책과 재정건전성, 정부개혁정책, 교육정책 이런 모든 부분에서서민들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아주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현 정부 초기에는 친기업 정책을 펴다가 중반 이후에 친서민 정책과 공정사회로 선회하면서 기업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서민으로부터도 외면받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혹독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총리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친기업·친서민·공정 사회 이와 같이 정부 정책의 근간이 바뀌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친기업·친서민 정 책이 결코 이렇게 서로 부닥치는 이런 정책이라 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친기업이라는 것도 대기업 프렌들리도 아니고 요, 말하자면 기업의 활동을 통해서 성장을 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복지도 증진시켜 나간다 하는 것이 기본 정책이었고요. 그리고 실제생활에 있어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노력을 하겠다 하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서로어긋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아시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또 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른 여러 가지 세계 경기침체 이런 사항들이 복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정부만의 책임이다, 잘못이다 이렇게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국민들이 낙담을 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성헌 의원 저는 총리께서 지금 우리 10대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인 비중이 몇 %인지 혹시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한 대충 5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헌 의원 그러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성헌 의원 10대 기업인데 예를 들어서 5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면 이런 부의 편중이라는 것 이 … 사회 생활할 때 제대로 가동될 수 있겠습 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일응 10대 기업의 매출 등을 비교를 하면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속 해 있는 많은 종업원이라든지 임직원이라든지 이 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에게 국민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성헌 의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고용노동 자들의 거의 90%가 중소기업에 의해서 일자리 갖고 있는 것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국무총리 김황식 99%가, 고용에 있어서는 구 십팔구%가 중소기업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헌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은 대기업들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한 점도 있지 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일이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나마 대기업에서조차도 지금 정부 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제가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MB 정부 실패에 대해서 중대 한 과실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서는 국정 철학과 국가 발전 전략의 실패입니다. 그 두 번째로서는 사회 통합의 실패 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위약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얘기 했지만 지금 보면 이게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 런 구시대적인 논리에 의해서만 운영됐다고 하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 개개인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제대로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장은 여전히 필 요하지만 그 열매가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게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의 메커니즘 구축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정 철학과 국가 발전 전략 측면에서 좀 시대적인 함의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점이 저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이고, 둘째로서는 대한민국 공동체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인 계층 갈등 또 대립과 사회 분열, 이런 것을 완화시키 기는커녕 오히려 이것을 조장한 듯한 그런 의미 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굳이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겠습 니다마는 사회 통합이 국가 발전의 제1의 전제라 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그런 소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MB 정부의 가장 실패한 원인 중의 하나는 위약의 실패입니다, 위약의 실패요.

국민들을 상대해서 약속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쉽게 뒤집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결국은 이것이 이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오게 하 는 그런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 을 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우선 경제적인 성장이 대기 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서민에 전달되지 않았다 하는 그 점과 관련해 가지고는……

분명히 세계 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가 비교적 잘해 왔 습니다. 잘해 왔지만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전달되 지 못한 그런 점은 있지만 그러나 정부로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조차도 여러 가지 볼멘소리를 할 정도로 대기업 동반성장이라든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 장이나 또는 골목상권의 침투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든지 이와 같은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습니 다. 기울여 왔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대기업 프 렌들리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요.

그리고 성장의 효과라는 것도, 이것도 바로바 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적으로 성과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사회에 남 아 가지고 결국은 전체적인 국부로서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지 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층 갈등이 오히려 조장 되고 사회 통합에 저해가 됐다 하는 점에 대해서 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부 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 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위배를 했다, 뒤집었다……

약속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을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그것이 방법론적으로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얻지 못해서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그런 결과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렇게 결합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으로 한마디로 모든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섭섭합니다.

O이성헌 의원 제가 총리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더 냉정하게 스스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서 나머지 1년 동안을 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이성헌 의원 단지 그런 면에서 저는 마지막 정말 남아 있는 1년 동안 과제에 대해서 제가 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 우선 대통령 주변도 그렇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고쳐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지금 MB 정부가 마지 막까지 사회 통합에 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지금 계층 간이나 지역 간이나 세대 간 갈등이라는 것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이 문제를 통합해내고 조정해 내는 이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MB 정부에서 임기 말에 어쩌면 마지막 국정과제일 수 있는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데 정말중립적으로 아주 엄정하게 선거 관리를 해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 김황식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공정 선거 관리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을 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신뢰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노력을 하겠고, 사회 통합…… 정말 모든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 면서 계층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시정할 수 있도 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솔직히 정부로서도 제일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정부가 제일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또 우리 국민 모두도이 점에 함께 동참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헌 의원** 제가 좀 각론적으로 질문을 드리 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정부질문, 지금 세 번째 하면서 같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총리께서는 대학가에서 요새 유행한다는 NG족이라는 얘기를 들어 본 적 있습니까?

- ○국무총리 김황식 NG족이요?
- **○이성헌 의원** NG족!
-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못 들었습니다.
- ○이성헌 의원 No Graduation.
- ○국무총리 김황식 예, No Graduation.
- ○이성헌 의원 요즘에 학생들이 취업이 안 되니까 5학년 되는 것은 기본이고 6학년, 7학년까지 간다는 겁니다.
- ○국무총리 김황식 예.
- ○**이성헌 의원** 그래서 졸업하지 않고 계속 취업 할 때까지 학교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얘기 못 들으셨지요?

- ○국무총리 김황식 압니다. 그 현상은 알고 있습니다.
- ○**이성헌 의원** 또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하면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 ○국무총리 김황식 예.
- ○이성헌 의원 그런데 지난 2011년 11월 달에 보니까 박재완 기재부장관께서 '고용 대박'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지요?
- ○국무총리 김황식 예.
- **○이성헌 의원** 그것 적절한 표현이었습니까?
- ○국무총리 김황식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의외로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 하는 것을 숫자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일자리의 질이라든지 또 청년실업의 문

제, 아직도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면 적절 한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이성헌 의원 그러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러나 박 장관이 순수한 마 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국민의 정서하고는, 적절치 않은 그런 표현이었다고 생 각합니다.

○이성헌 의원 아니, 순수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기재부장관으로서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많은 젊은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이 됩니다.

대박이 아니라 쪽박입니다, 쪽박.

그래서 정말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있는 많 은 학생들, 졸업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대박 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 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래서 그때 박 장관이 그런 표현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바로……

○이성헌 의원 2011년에······

지금 청년실업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통계상으로는 하여튼 7% 중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헌 의원 체감실업률은 얼마인지 아십니 까?

○국무총리 김황식 한 20% 가까이 될 겁니다. **○이성헌 의원** 21%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실제로, 정부에서 통계수치는 7%라 고 발표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1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업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재부장관께서 '고용 대박'이라 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바로 이런 7%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수치에 지금 스스 로 도취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보면 현장에서는 20%가 넘는 사람들이 실업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박 장관이 그렇게 표현한 것 은 일자리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40만, 50만 자 리 이렇게 해서 기대보다는 더 많은 성과가, 일 자리가 생겼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신 말씀이 었고, 또 그 점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았다 하는 것을 본인이 발표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 일자리 통계상의 문제, 그리 고 체감상의 문제도 있지만 한 가지 변명같이 말 씀드린다고 한다면 세계적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결코 그것 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우리가 잘했다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요컨대 일자리 창출, 그리고 특히 청년실업 해 소 문제를 위해서는 정부가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헌 의원** 총리님, 제가 지금 이 수치를 들 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지금 정부에서 보면 통계 수치라든지 여기에 연연하셔 가지고 상황 판단을 하고 현장의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성헌 의원** 좀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하기 때 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국의 뉴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는 청년실업자에게 개인 지도교사를 붙여 가지고 전부 일할 수 있도록 코치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벨기에 같은 경우에 로제타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역시 이것도 공기업과 민간기 업에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청년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고용하는 회 사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는 것 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현장성 있고 구체성 있는 이 런 대책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업률 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좀 착안하시면 어떻 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동안에 청년실업 해소 대책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대책을 구체적으로 상 당히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 이 그러한 정책들이 보다 구체화되어 가지고 현 실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헌 의원** 청년들이 스스로 3포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가장 큰 게 등록금 문제 아니겠 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성헌 의원** 지금 학생들이 평균 대출을 받고 있는 액수 규모가 얼마인지 혹시 모르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성헌 의원 1353만 원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면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최근래에 정부에서 지난 9월 8일에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해 가지고 한 5% 정도 등록금을 완화하겠다고 이렇게 다 얘기 를 해서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등록금 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5% 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2%, 3% 이렇게 다양화하고 있어서 전체 평균으로 봐서는 5%에 지금 현재로서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헌 의원 그러니까 미치지 못하는 정도가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저하게 미치 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등록금 반값으로 만든다는 그런 구호들이 많이 나왔을 때 그래도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그래서 5%까지 낮출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 정도 되면 그것은 오히려 정부가 말한 얘기가 무색해지는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아시다시피 등록금은 이렇게 명목상 결정이 되더라도 정부가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하면 소득이 낮은 계층에 있어서는 여하튼 25% 평균적으로 재정이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학교가 여러 가지 구조개혁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또 한 5%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 아마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그러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대학 당국들과 협의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더 등록금이 저하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원회를 통 해서 더 정확히 따져서 더 저감하는 노력을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헌 의원 제가 이 질의를 총리께 드리는 것은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범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간구하 시라, 또 그것을 점검하시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 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제가 위원장이 되어 있는 교육개혁협의회가 있습니다. 교육개혁협의회에 우리 정부 측 인사도 있고 밖의 인사도 있고 하는데 그런 데에서 등록금 문제라든지 전형료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적극적으로 챙기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아시다시피 기왕에 등록금 수준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모든 대학 정책이 수립되어 왔고 진행되어 왔던 것이 하루아침에 국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반영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성헌 의원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2 년제까지 포함해서 344개 대학이 있는데 금년에 내리기로 결정한 대학이 불과 109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지금 보면 5%까지 내린 데는 75개 대학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 말은 해 놓고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다 그러면 정부의 권위도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지로 국민들에게 오히려 속이는 결과가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학교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챙겨서 더 낮출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만약 정부가 이렇게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면 금년에도 필시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올리겠다 하는 그런 노력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회가 요구하고 국회에서 요구를 하고 정부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동결이 아니고 또 이렇게 저감이 되는 이런 성과도 나오고 있다 하는 측면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〇이성헌 의원 지금 정부에서 하신 일에 비해서 당장 현장에 있는 학생들은 너무 힘듭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이성헌 의원 공부하기 위해서 몰두해야 되는데 등록금 갚기 위해서, 연체 이자 갚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혹시 이 대학생들 신용불량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숫자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성헌 의원 지금 보면 한 3만 명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학교 졸업하면 취업하기 위한 면접도 할 수 없습니다, 왜?

회사에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조회를 해 가지고 그 기록을 보면 아예 면접도 제외시켜 버리거든 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런 사람들은 아예 취업도 할 수 없는 또 면접도 할 수 없는 이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을 정 말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고생하 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좀 점검하고 낮출 수 있도 록 해 주시기를 요망하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말씀하시는 등록금 문 제 같은 것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 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신용불량자 문제는 정말 사회생 활의 출발점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 문제의 위중함을 알고 말하자면 신용유의자인 상태에서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하 고 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학자금 상환을 유예 하는 이런 제도들을 개발을 해서 신용불량 유의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하고 만약 그런 상태에 빠 지면 빨리 신용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 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 니다.

○**이성헌 의원** 지금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2012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할 수 있게 됐는데 신용정보를 조회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시행 시기가 2013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이 학생 들에게 졸업하고 나서 제대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이성헌 의원 이런 신용불량자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를 바라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성헌 의원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생 취업 문제하고 신용불량자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미래의 기둥들입 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신용불량자 딱지를 안고 나온다 그러면 정말 그 젊은 인생에 게 너무나 불행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이 개인에게도 있겠 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적인 문제에 의해서 나오는 게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말 적극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촉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

원 여러분!

이제 18대 국회도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 민국 의정사의 한 장을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밀려오는 것은 비단 저만의 심정이 아닐 것입니다.

노력은 이자를 낳고 게으름은 연체료를 낳는다 고 했습니다. 18대 국회가 두둑한 이자 대신에 연체료만 남기고 마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 려운 마음입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생활을 넘어서 생존의 위협 을 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좀더 치열하게 민생 을 챙겼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듭니다. 하지만 역사는 길과 같습니다.

앞 세대가 만들어 놓은 길의 끝자락에서 새로 운 길을 닦아 가는 것이 역사이듯이 우리 의회 역시 성찰과 노력을 통해서 더 나은 의회, 더 좋 은 정치를 만들어 갈 것을 굳게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저의 소망과 각오를 담은 짤 막한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는 정호승 씨의 시 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 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 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 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이성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서 잠시 정회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01인)

찬성 의원(183인)

강 명 순 강 봉 균 강 기 갑 강 기 정 강 석 호 강 성 종 강 성 천 강 승 규 강 창 일 고 승 덕 곽 정 숙 권 선 택 권 영 길 권 영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 낙 성 김 동 성 김 동 철 김무성 김 상 희 김 선 동 金先東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회 김 영 진 김 소 남 김옥이 김 우 남 김 유 정 김용 태 김 재 경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정 김 진 애 김 진 표 김 춘 진 김충조 김 태 원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태 환 김 학 재 김 혜 성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철 래 문 학 진 문 희 상 박 근 혜 박 보 환 박 선 숙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진 배 영 식 백 성 운 배 은 희 백 재 현 서 병 수 서 상 기 서 종 표 선 경 식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영 선 송 훈 석 신낙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지호 심대평 심 재 철 안 경 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오제세 원 유 철 원 희 목 유기준 유성엽 유 승 민 유 일 호 유 재 중 유 정 복 유정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이두아 이명규 이미경 윤 영 이범관 이 병 석 이 사 철 이 범 래 이석현 이 성 남 이 애 주 이 영 애 이용희 이정선 이용경 이인기 이정회 이종혁 이 주 영 이진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춘 식 이 화 수 이 한 구 이 혜 훈 장 병 완 전 재 희 장 세 환 장 윤 석 전 현 희 정 범 구 정 수 성 전 혜 숙 정양석 정 영 희 정의화 정 진 섭 정 하 균 조경태 정 해 걸 정희수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정식 조 진 래 조 진 형 주 승 용 진 수 희 조 해 진 주 광 덕 차 명 진 최경화 최경희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연 희 최인기 최 종 원 추 미 애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준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진 하 반대 의원(9인)

구 상 찬

송 광 호

李玲愛

이 종 구

조 순 형 주 성 영 주 호 영 진 영 최 병 국 기권 의원(9인) 강 길 부 권 성 동 윤 진 식 이 한 성 임 동 규 정 미 경 진 성 호 한 기 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전혜숙 의원 외 34인 발의) 투표 의원(221인) 찬성 의원(61인)

강 창 일 강 기 정 강 봉 균 강성종 김 동 철 김 상 희 김성 곤 김 영 록 김 영 진 김 우 남 김 유 정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진 애 김 춘 진 김 진 표 김 학 재 김 충 조 문 학 진 문 희 상 박선숙 박 영 선 박 우 순 박 은 수 박지 원 백 재 현 변 재 일 서종표 선 경 식 송 훈 석 건 안 규 백 신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제 창 유성엽 이 낙 연 이미경 이석현 이성남 이용희 이 찬 열 장 병 완 이 춘 석 장 세 환 전 혜 숙 정 동 영 정 범 구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영 택 조 정 식 주 승 용 최 인 기 최 규 성 최 규 식 최 종 워 추 미 애 홍 영 표 홍 재 형 홍 희 덕

반대 의원(147인)

홍 사 덕

강 길 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 천 강 승 규 고 승 덕 구 상 찬 권경석 권성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 동 성 김 무 성 김 선 동 김성동 김성수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옥 이 김용 태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정 김 정 훈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혜 성 김호연 나 성 린 남 경 필 노 철 래 박 근 혜 박 민 식 박 선 영 박 영 아 박 보 환 박 순 자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성운 서 병 수 서 상 기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영 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심 재 철 안 경률 안 상 수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여 상 규 원 유 철

원 회 목 유기준 유 일 호 유재중 유정복 유 정 현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진 식 윤 석 용 이경재 윤 영 이두아 이명규 이범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성헌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은 재 이 인 기 이정선 이 종 구 이종혁 이 주 영 이진복 이 진 삼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학 재 이한구 이한성 이 화 수 임동규 임 해 규 전 재 희 장 윤 석 정 병 국 정미경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의화 정 진 섭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 문 환 조 원 진 조 진 래 조 진 형 조 윤 선 조 전 혁 주성영 조 해 진 주 광 덕 주 호 영 차 명 진 진 성 호 진 수 희 진 영 최경환 최경희 최병국 한 기 호 허 태 열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현기환 홍 사 덕 홍일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기권 의원(13인)

강 기 갑 곽 정 숙 권 영 길 권 선 택 권 영 진 김 낙 성 김성식 金先東 김 정 권 유 승 민 이정희 이혜훈 최연회

(이병석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찬성 의원 61인, 반대 의원 147인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허원제 의원 외 173인 발의) 투표 의원(223인) 찬성 의원(150인)

강 길 부 강 명 순 강석호 강성 천 구 상 찬 권 경 석 강 승 규 고 승 덕 권 성 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 동 성 김 무 성 김선 동 김성동 김성수 김성조 김성회 김 옥 이 김세연 김 영 선 김 소 남 김용 태 김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태 원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혜 성 김호연 나성린 남 경 필 노 철 래 박 근 혜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순 자 박 영 아 박 준 선 박 진 배 영 식 배 은 희 백 성 운 서 병 수 서 상 기 성윤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 호 송 영 선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영 수 신 지 호 심 재 철 안 경률 안 상 수 아 형 환 안 홍 준 아 효 대 여 상 규 원 유 철 원 회 목 유 기 준 유 일 호 유 재 중 유정복 유 정 현 윤 상 현 윤 상 일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두아 이 명 규 이 범 관 이 범 래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애 주 이 영 애 이 성 헌 李玲愛 이 은 재 이인기 이 종 구 이정선 이 진 복 이 주 영 이종혁 이 진 삼 이 철 우 이 춘 식 이 학 재 이한구 이 화 수 임 해 규 이 한 성 임 동 규 정 병 국 장 윤 석 전 재 희 미경 정 정 의 화 정 수 성 정양석 정 영 희 정진섭 정 하 균 정 해 걸 정회수 조 문 환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주 광 덕 조 진 래 조 진 형 조 해 진 주성 영 주 호 영 진성호 진 수 회 진 영 차 명 진 최경환 최경희 최병국 최 연 희 한 기 호 한 선 교 허 원 제 허 천 허 태 열 현 기 환 홍 사 덕 홍일 표 홍 준 표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반대 의원(61인)

강기 갑 강 봉 균 권 영 길 곽 정 숙 김동철 김 상 희 金先東 김성 곤 김성식 김 영 록 김 영 진 김 우 남 김 유 정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진 표 김 학 재 김 춘 진 김충조 문 학 진 문 희 상 박 선 숙 박 영 선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지 원 변 재 일 서 종 표 송 훈 석 선 경 식 신 건 안 규 백 유 성 엽 양 승 조 오 제 세 우 제 창 이 성 남 이 낙연 이미경 이석현 이용희 이정희 이 찬 열 이 춘 석 장 병 완 장 세 환 전 혜 숙 정 동 영 정범구 조 배 숙 조 정 식 조 영 택 주 승 용 최규성 최 규 식 최 인 기 최종원 추 미 애 홍영 표 홍 재 형 홍 희 덕

기권 의원(12인)

강 기 정 강성종 강 창 일 권 선 택 권 영 진 김 낙 성 김 진 애 박선영

유 승 민 조 경 태 백 재 현 이 혜 훈

○출석 의원(260인)

강 기 정 강 기 갑 강 길 부 강 명 순 강 봉 균 강석호 강성 천 강 성 종 강 승 규 강 창 일 고 흥 길 고 승 덕 곽 정 숙 구 상 찬 권 경 석 권 선 택 권성동 권 영 세 권 영 권 영 길 진 권 택 기 김 광 림 김 기 현 김 낙 성 김 무 성 김 상 희 김 동 성 김 동 철 김선 동 김성 곤 김성동 金先東 김성조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회 김세연 김 소 남 김 영 록 김 영 선 김 영 진 김 영 환 김 옥 이 김용 태 김 우 남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균 김 재 윤 김 재 경 김 정 김 정 권 김 정 훈 김 진 애 김 창 수 김 충 조 김 진 표 김 춘 진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송 김 학 용 김 학 재 김 형 오 김호연 김혜성 김 효 석 나성 린 남 경 필 노 영 민 문 학 진 문 희 상 노 철 래 박 근 혜 박 기 춘 박 민 식 박 보 환 박 상 은 박 상 천 박 선 숙 박선 영 박 순 자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우 순 박 은 수 박 준 선 박 지 워 박 짉 배 영 식 백 원 우 배 은 희 백 성 운 백 재 현 변웅전 변 재 일 서병수 서 상 기 서종표 선 경 식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광호 송 민 순 송 영 선 신 낙 균 송 훈 석 신 건 신 영 수 신지호 신 상 진 신 성 범 신 학 용 심대평 심 재 철 안 경 률 안 형 환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홍 준 양 승 조 여 상 규 안 효 대 오 제 세 우 윤 근 우 제 창 원 유 철 원 혜 영 원 희 룡 원 회 목 유기준 류일호 유선호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재 중 유정현 유정복 유 영 윤 석 용 윤 상 일 윤 상 현 윤 진 식 이경재 이 낙 연 이두아 이 명 규 이 병 이미경 이 범 관 이 범 래 석 이 사 철 이석현 이성남 이 상 민 이성헌 이 애 주 李玲愛 이 영 애 이 용 경 이 용 섭 이 용 희 이 윤 석 이 은 재 이 인 기 이재선 이정선 이종구 이종혁 이 주 영 이정희 이 철 우 이 진 복 이 진 삼 이 찬 열 이 춘 석 이 춘 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혜훈 이 화 수 임 동 규 임 영 호 임 해 규 장 광 근 장 병 완 장 윤 석 장 세 환 전 병 헌 전 재 희 전 현 희 전 혜 숙 정 몽 준 정 동 영 정미경 정 범 구 정 병 국 정세균 정 수 성 정양석 영 희 정의화 정 정 장 선 정 진 섭 정 태 근 정 하 균 정희수 정 해 걸 조경태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순 형 조 영 택 조 원 진 조 윤 선 조 전 혁 조 정 식 조 진 래 주성 영 조 진 형 조 해 진 주 광 덕 주 승용 주호영 진 영 진 성 호 진 수 희 차 명 진 최 경 환 최경희 최 병 국 최 규 성 최 규 식 최연 희 최 영 희 최인기 최 재 성 최종원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허 허 원 제 허 태 열 현기환 홍 사 덕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재 형 홍 준 표 홍 희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천

○개의 시 재석 의원(174인)

강 기 갑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명 순 강석호 강성종 고 흥 길 강성 천 곽 정 숙 구 상 찬 권 경 석 권성동 권 영 세 권 택 기 김 광 림 김기현 김동성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선 동 김성 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 태 김 소 남 김 영 선 김 영 환 김 영 록 김 영 진 김 옥 이 김용 태 김 우 남 김 유 정 김 을 동 김 장 수 김 재 경 김 재 윤 김 김 정 훈 김 진 애 김충조 정 김 학 송 김 충 환 김 태 원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학 재 김 형 오 김혜성 나성 린 김 효 석 남 경 필 노 영 민 노 철 래 박 근 혜 문 희 상 박 보 환 박 영 선 박 영 아 박 상 천 박 순 자 박 은 수 박 준 선 배 은 희 백 성 운 변 재 일 서 병 수 백 재 혐 서 상 기 서 종 표 선 경 식 성 윤 환 손 범 규 손 숙 미 송 광호 송 민 순 송 영 선 신 건 신 낙 균 신 성 범 심 재 철 안 형 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우 윤 근 원 유 철 오 제 세 원 혜 영 유선호 원 희 룡 원 희 목 유 정 복 유 일 호 유정현 유 상 일 윤 상 현 윤 석 용 윤 영 윤 진 식 이경재 이 낙 연 이두아 이 명 규 이미경 이 병 석 이 사 철 이 상 민 이애주 이 영 애 이용경 이 윤 석 이 은 재 이정선 이정희 이 종 구 이종혁 이 주 영 이 찬 열 이 철 우 이춘식 이 하 구 이 학 재 이 한 성 장 병 완 이 혜 훈 이 화 수 임동규 전 혜 숙 정 동 영 정미경 정 범 구 정병국 정 수 성 정 영 희 정세 균 정의화 정 진 섭 정 하 균 정 해 걸 정희수 조 문 환 조 배 숙 조 원 진 조 전 혁 조 진 래 조 진 형 주성영 주 승용 진 수 희 진 영 최경환 최경희 최규식 최병국 최 연 희 최영희 최 인 기 추 미 애 한 기 호 허 원 제 허 천 현기환 홍 사 덕 홍 재 형 홍일 표 홍 회 덕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진 하

○청가 의원(6인)

김 부 겸 류 근 찬 박 병 석 박 주 선 이 유 성 이 종 걸

○국회사무처

입 법 장 곤 차 김 성 공 의 사 국 장 하 식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무 국 총 리 긲 황 식 통 일 부 장 류 우 익 관 법 무 부 장 궈 재 과 짓 국 방 부 장 관 김 관 진 행정안전부장관 맹 혅 7

○출석 정부위원

외교통상부제1차관 박 석 환 지식경제부제2차관 석 조 방송통신위원회 홍 성 규 부 위 워

【보고사항】

○의원 퇴직

의원명	선거구	소속정당	사유	연월일
유원일	비례대표	창조한국당	퇴직	2012. 1. 25

○의석 승계

의원명	선거구	소속정당	연월일
선경식	비례대표	창조한국당	2012. 1. 26

○상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7) []	2] 24 2]	어느 교섭단체에도	2012.
정무	선경식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2. 2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명	사임위원회	보임위원회	교섭단체	연월일
안규백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	국방	민주	2012.
김부겸	국방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	통합당	1. 20
강성종	정무	국토해양	민주	2012.
김희철	국토해양	정무	통합당	1. 30
김희철	정무	국토해양		
강성종	국토해양	정무		
천정배	기획재정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		
박우순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	기획재정	민주 통합당	2012. 2. 1
이찬열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	국토해양		
정장선	국토해양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정치개혁	조경태	박영선		2012.
특별	_ 조경대	박경선 	민주	1. 25
기후변화	기서고	박선숙	통합당	2012.
특별	김성곤	박신국		2. 7

○교섭단체 가입

		2.422
의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김을동		
김정		
김혜성		
노철래	한나라당	2012. 2. 6
송영선	인다다정	2012. 2. 0
윤상일		
정영희		
정하균		

○의안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2012. 1. 19 이진복·박민식·정갑윤·조문환· 최구식·최병국·정진섭·김호연·안홍준· 유재중·김무성 의원 발의)

1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2012. 1. 19 김광림·김세연·남경필·정해결· 강석호·박보환·박대해·유재중·윤영· 이화수·이두아 의원 발의)

1월 2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래 의원 대표 발의)

(2012. 1. 19 이강래·김재윤·김춘진·변웅전· 김영진·정장선·김용구·장병완·신건· 이성남 의원 발의)

1월 20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강래 의원 대표발의)

(2012. 1. 19 이강래·김재윤·김춘진·변웅전· 김영진·장세환·정장선·김용구·장병완· 이종걸 의원 발의)

1월 20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섭 의원 대표 발의)

(2012. 1. 20 정진섭·정병국·배은희·강성천· 김용구·정장선·이종구·이진복·원유철· 박보환 의원 발의)

1월 2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2011. 10. 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 DDos) 공격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12. 1. 20 이두아 의원 외 165인 발의) 1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 1. 20 정부 제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 발의)

(2012. 1. 20 박보환·김태환·정진섭·권영진· 서상기·정두언·김옥이·김선동·조전혁· 진영·임해규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25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2012. 1. 20 김영진·조영택·강기갑·유선호· 김세연·김동철·정동영·장세환·박주선· 추미애·이강래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 발의)

(2012. 1. 20 황영철·박준선·김세연·신성범· 조진래·박민식·김성수·정해걸·유성엽· 김성식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 발의)

(2012. 1. 20 안효대·유정현·김소남·최경희· 정수성·백성운·김성조·손범규·신지호· 송광호 의원 발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 의원 대표발의)

(2012. 1. 20 백원우·박은수·주승용·전현희· 조정식·양승조·이석현·장세환·이명수· 최영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2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

(2012. 1. 20 황영철·박준선·김세연·신성범· 조진래·박민식·김성수·정해걸·유성엽· 김성식 의원 발의)

1월 25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김창수) 사직의 건

(2012. 1. 25 김창수 의원 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 발의)

(2012. 1. 25 추미애·박은수·김영진·박주선· 문학진·이미경·신낙균·김학재·최영희· 강창일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 발의)

(2012. 1. 25 추미애·박은수·김영진·박주선· 신낙균·문학진·이미경·김학재·최영희· 강창일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에 의원 대표발의)

(2012. 1. 25 추미애·박은수·김영진·박주선·

문학진 · 이미경 · 정범구 · 김학재 · 최영희 · 강창일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

(2012. 1. 25 추미애·박은수·김영진·박주선· 문학진 · 이미경 · 정범구 · 김학재 · 최영희 · 강창일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한국체크카드공사법안(박종근 의원 대표발의)

(2012. 1. 25 박종근·주성영·정희수·안홍준· 이명규 · 박보환 · 조원진 · 김무성 · 손범규 · 김용구·홍사덕·서상기·이진복 의원 발의) 1월 2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 의원 대표발의)

(2012. 1. 26 정옥임·김옥이·김학용·강성천· 이춘식 · 진성호 · 김정 · 구상찬 · 손범규 · 이애주 · 강석호 의원 발의)

1월 27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 발의)

(2012. 1. 26 배은희·이주영·나성린·김호연· 김선동 · 김세연 · 정두언 · 유정현 · 안형환 · 김기현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2. 1. 26 배은희·이주영·나성린·김호연· 김선동 · 김세연 · 정두언 · 유정현 · 안형환 · 김기현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27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 (2012. 1. 27 김학송·정의화·김정권·유승민· 조진래 · 권경석 · 여상규 · 최연희 · 김태호 · 정미경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송 의원 대표발의) (2012. 1. 27 김학송·정의화·김정권·유승민· 조진래 · 권경석 · 여상규 · 최연희 · 김태호 · 정미경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30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

(2012. 1. 27 권선택·변웅전·김낙성·임영호· 김창수 · 김용구 · 류근찬 · 심대평 · 이회창 · 이진삼 · 이상민 · 이명수 · 배영식 · 이인제 ·

이재선 · 김광림 · 이철우 · 정해걸 · 정수성 · 최경환 · 김성조 · 정희수 · 이한성 · 주호영 · 서상기·이명규·조원진·김태환 의원 발의) 1월 30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

(2012. 1. 27 김재균·강창일·김부겸·김영진· 강기정 · 최규성 · 문학진 · 유선호 · 장세환 · 주승용 의원 발의)

1월 3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 발의)

(2012. 1. 27 원혜영·조영택·조정식·김재윤· 김부겸 · 송민순 · 김상희 · 정장선 · 김동철 · 이춘석 의원 발의)

1월 3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우제창 의원 대표발의)

(2012. 1. 30 우제창·강성종·김부겸·김재윤· 박우순 · 박은수 · 박지원 · 신건 · 신낙균 · 조영택 의원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2012. 1. 30 이주영·강길부·고흥길·김무성· 김옥이 · 나성린 · 신성범 · 유기준 · 이범관 · 이애주 · 이종구 · 임해규 · 정해걸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3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한국전기안전공사법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

(2012. 1. 30 김영환·박진·이명규·김태호· 유선호 · 조경태 · 정태근 · 주승용 · 전현희 · 김태환·김재경·조정식 의원 발의)

1월 31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 **률안**(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2012. 1. 30 손숙미·김소남·원희목·김선동· 조진래 · 최병국 · 강명순 · 정수성 · 이춘식 · 서상기 의원 발의)

障碍人・老人・姙産婦長의便宜增進保障에관한 法律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2012. 1. 30 손숙미·조진래·윤영·정희수· 김소남・김영우・최병국・강명순・정수성・ 이춘식 의원 발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 의원 대표발의)

(2012. 1. 30 손숙미·조진래·윤영·성윤환·

원희목·이영애·정희수·김소남·최병국· 강명순 의원 발의)

이상 3건 1월 3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2012. 1. 30 원유철·유일호·이화수·정미경· 신영수·김기현·조진형·한기호·정수성· 김태원·박보환·신상진·황영철·권택기· 김장수·김성동·권영진 의원 발의)

1월 31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신라·가야·유교문화권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2012. 1. 31 이철우·정희수·김광림·김태환· 정해걸·서상기·성윤환·이한성·권영진· 장윤석·최경희·김소남·정수성·강석호· 이병석·김부겸·이인기·김성조·홍사덕 의원 발의)

2월 1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수 의원 대표 발의)

(2012. 1. 31 신영수·강길부·김성태·김을동· 김영선·류근찬·백성운·손범규·송광호· 정해걸·정희수 의원 발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 발의)

(2012. 1. 31 주승용·박은수·이춘석·강창일· 정장선·김성곤·김영환·노영민·김재균· 김희철·김영록·정범구·우윤근·장세환· 조정식·최영희·김영진 의원 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2. 1. 31 주승용·노영민·김재균·정장선· 김영록·강창일·김영환·우윤근·장세환· 박은수·최영희·김영진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1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래 의원 대표 발의)

(2012. 1. 31 이강래·김부겸·장세환·김재윤· 김영록·김춘진·정병국·강창일·우윤근· 변재일 의원 발의)

2월 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2. 1. 31 권성동·최종원·허천·윤석용· 박우순·한기호·이군현·황영철·원희목· 진영·김태환·송훈석·최연희 의원 발의) 2월 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 발의)

(2012. 1. 31 권성동·최종원·허천·윤석용· 박우순·한기호·이군현·황영철·원희목· 진영·김태환·송훈석·최연희 의원 발의) 2월 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 31 정부 제출)

2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

(2012. 1. 31 유재중·송광호·최경희·김소남· 이화수·이두아·유일호·김학용·김세연· 신상진·정미경 의원 발의)

2월 1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 발의)

(2012. 1. 31 김재윤·최종원·조경태·송민순· 원혜영·이종걸·우제창·이강래·전현희· 이성남 의원 발의)

2월 1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사철 의원 대표 발의)

(2012. 2. 1 이사철·이은재·김우남·정갑윤· 김태환·정해걸·한기호·송훈석·김호연· 강석호 의원 발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2. 2. 1 김춘진·김성곤·김성순·김영록· 김영진·김호연·변재일·손범규·안민석· 유성엽·이용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사철 의원 대표발의)

(2012. 2. 1 이사철·이은재·김우남·정갑윤· 김태환·정해걸·한기호·송훈석·김호연· 강석호 의원 발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사철 의원 대표 발의)

(2012. 2. 1 이사철·이은재·김우남·정갑윤· 김태환·정해결·한기호·송훈석·김호연· 강석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2. 2. 1 김춘진·김성곤·김성순·김영록· 김영진 · 김호연 · 변재일 · 손범규 · 안민석 · 유성엽ㆍ이용희 의원 발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워 대표발의)

(2012. 2. 1 김춘진·김성곤·김성순·김영록· 김영진 · 김호연 · 변재일 · 손범규 · 안민석 · 유성엽ㆍ이용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2. 2. 2 김우남·김재윤·김영록·전현희· 최규성 · 김성수 · 서종표 · 이사철 · 유성엽 · 정해걸 의원 발의)

2월 3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

(2012. 2. 2 김우남·전현희·이사철·유성엽· 김성곤 · 김재윤 · 김영록 · 최규성 · 김성수 · 서종표 의원 발의)

2월 3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발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2012. 2. 2 권영진·황영철·한기호·김무성· 김성식 · 김세연 · 박민식 · 박보환 · 정갑윤 · 서상기 의원 발의)

2월 3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

(2012. 2. 2 김영환·박은수·김진애·김상희· 전병헌·홍영표·신학용·김영록·이찬열· 김학재 · 박영선 · 문학진 · 유선호 · 김희철 · 서종표 · 김유정 · 장세환 · 박주선 · 김혜성 · 김태원 · 정태근 의원 발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 2012. 2. 2 정부 제출)

이상 3건 2월 3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2012. 2. 2 권영진·한기호·김무성·김세연·

박민식 · 조전혁 · 박보환 · 황영철 · 정갑윤 · 서상기 의원 발의)

2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

(2012. 2. 2 조경태·우제창·김재윤·이종걸· 권영길·강기갑·백재현·김재균·노영민· 김영록·조해진 의원 발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2. 2. 2 김영록・김춘진・유선호・박우순・ 조경태 · 박은수 · 전현희 · 정범구 · 이용섭 · 김우남・金先東・신건 의원 발의)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 발의)

(2012. 2. 2 김영록·김춘진·유선호·박우순· 조경태 · 박은수 · 전현희 · 정범구 · 이용섭 · 김우남・金先東・신건 의원 발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2. 2. 2 김영록·김춘진·유선호·박우순· 조경태 · 박은수 · 전현희 · 정범구 · 이용섭 · 金先東・신건 의원 발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 발의)

(2012. 2. 2 김영록・김춘진・유선호・박우순・ 조경태 · 박은수 · 전현희 · 정범구 · 이용섭 · 김우남・金先東・신건 의원 발의)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2. 2. 2 김영록·김춘진·유선호·박우순· 박은수 · 조경태 · 전현희 · 정범구 · 이용섭 · 金先東・신건 의원 발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2. 2. 2 김영록·김춘진·유선호·박우순· 박은수 · 조경태 · 전현희 · 정범구 · 이용섭 · 金先東·신건 의원 발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2. 2. 2 김영록·김춘진·유선호·박우순·

이상 7건 2월 3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조경태 · 박은수 · 전현희 · 정범구 · 이용섭 · 金先東・신건 의원 발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 발의)

(2012. 2. 2 김영록·김춘진·유선호·박우순· 조경태 · 박은수 · 전현희 · 정범구 · 이용섭 · 金先東・신건 의원 발의)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 발의)

(2012. 2. 2 김영록·김춘진·유선호·박우순· 조경태·박은수·전현희·정범구·이용섭・ 김우남·金先東·신건 의원 발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2. 2. 2 김영록·김춘진·유선호·박우순· 조경태·박은수·전현희·정범구·이용섭・ 김우남·金先東·신건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3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2. 2. 2 김영록·김춘진·유선호·박우순· 조경태·박은수·전현희·정범구·이용섭· 김우남·金先東·신건 의원 발의)

2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2. 2. 2 김영록·김춘진·유선호·박우순· 조경태·박은수·전현희·정범구·이용섭· 金先東·신건 의원 발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2. 2. 2 김영록·김춘진·유선호·박우순· 박은수·전현희·정범구·이용섭·金先東・ 신건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 발의)

(2012. 2. 2 김영록·김춘진·유선호·박우순· 박은수·전현희·정범구·이용섭·金先東· 신건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3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원회에 회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 발의)

(2012. 2. 2 김영록·김춘진·유선호·박우순· 조경태·박은수·전현희·정범구·이용섭· 金先東·신건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2. 2. 2 김영록·김춘진·유선호·박우순· 조경태·박은수·전현희·정범구·이용섭· 김우남·金先東·신건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국무위원후보자(특임장관 고흥길) 인사청문요 청안

(2012. 2. 3 대통령 제출)

2월 3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 의원 대표 발의)

(2012. 2. 3 정옥임·이춘식·심대평·김호연· 김을동·김성회·홍사덕·나성린·강승규· 신영수 의원 발의)

2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 의원 대표발의)

(2012. 2. 3 정옥임·이춘식·심대평·이정선· 김호연·김을동·김성회·홍사덕·나성린· 강승규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 발의)

(2012. 2. 3 박민식·권영진·김성태·김세연· 서병수·신성범·원희룡·유재중·이진복· 주광덕·허원제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6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원회에 회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 발의)

(2012. 2. 3 유성엽·정병국·황영철·신건· 김우남·안민석·오제세·김용구·김춘진· 강창일·김성수 의원 발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2. 2. 3 변재일·양승조·유성엽·안민석· 박보환·서상기·김세연·김유정·조정식· 김성곤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2. 2. 3 변재일·양승조·유성엽·안민석· 박보환·서상기·김세연·김유정·조정식· 김성곤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2012. 2. 3 최영희·강창일·김상희·김유정·김충조·문학진·박우순·박은수·백재현· 안민석·양숭조·오제세·원혜영·이춘석· 장세환·전현희·조경태·주승용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6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2012. 2. 3 최영희·백원우·주승용·이춘석·

박은수 · 이성남 · 원혜영 · 추미애 · 정범구 · 강창일 의원 발의)

2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보환 의원 대표 발의)

(2012. 2. 6 박보환·권영진·서상기·정두언· 김세연 · 김옥이 · 김태환 · 조전혁 · 이진복 · 고흥길 의원 발의)

2월 6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 발의)

(2012. 2. 6 김세연·권영진·송훈석·정갑윤· 황영철 · 정해걸 · 박보환 · 서상기 · 박민식 · 주광덕·이군현 의원 발의)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박보환 의원 대표발의)

(2012. 2. 6 박보환·서상기·정두언·김세연· 김옥이 · 조전혁 · 이진복 · 고흥길 · 이철우 · 진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7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2012. 2. 6 이진복·박민식·강용석·최병국· 박보환 · 김호연 · 유재중 · 안홍준 · 이명규 · 현기환 의원 발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2012. 2. 6 이진복·박민식·강용석·최병국· 박보환 · 김호연 · 유재중 · 안홍준 · 이명규 · 현기환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2012. 2. 6 이진복·강용석·최병국·김호연· 유재중 · 안홍준 · 이명규 · 현기환 · 김무성 · 정의화 의원 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 발의)

(2012. 2. 6 이진복·최병국·박민식·김호연· 유재중 · 안홍준 · 이명규 · 현기환 · 김무성 · 정의화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7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2012. 2. 6 이진복·박민식·강용석·최병국· 박보환 · 김호연 · 유재중 · 안홍준 · 이명규 · 현기환 의원 발의)

2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옥임 의원 대표 발의)

(2012. 2. 6 정옥임·李玲愛·나성린·강승규· 김태원 · 이영애 · 강석호 · 김성회 · 김기현 · 김성태·박순자 의원 발의)

2월 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2012. 2. 6 김성태·허천·권영진·황영철· 주광덕 · 최경희 · 강성천 · 신영수 · 김성식 · 정갑윤 의원 발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2012. 2. 6 김성태·허천·권영진·황영철· 주광덕 · 최경희 · 강성천 · 신영수 · 김성식 · 정갑윤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2. 7 정부 제출)

2월 8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2. 7 정부 제출)

2월 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2. 2. 7 박선영 · 곽정숙 · 권선택 · 김낙성 · 김동성 · 김소남 · 김영선 · 김옥이 · 김용구 · 김춘진 · 신낙균 · 원혜영 · 정몽준 · 최경희 의원 발의) 2월 8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2. 2. 8 황우여·김진표 의원 외 261인으 로부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을 하고자 2월 9일 본회의에 국무총리·외교 통상부장관 · 통일부장관 · 법무부장관 · 국방 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의 출석을 요구)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 (2012. 2. 8 황우여·김진표 의원 외 261인으로

부터 경제 · 교육 · 사회 · 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2월 10일 본회의에 국무총리ㆍ기획재 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농림 수산식품부장관 · 지식경제부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 · 환경부장관 · 고용노동부장관 · 여성가족

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 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2012. 2. 8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2012. 2. 8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제출)

○의안 심사

2011. 10. 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 DDos) 공격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12. 1. 20 이두아 의원 외 165인 발의)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12. 1. 9 김학재 의원 외 88인 발의)

(이상 2건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원 의원 대표 발의)

(2011. 4. 13 최종원·김재윤·장병완·이종걸· 천정배·조영택·박우순·정장선·김부겸· 김재균·양승조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 발의)

(2009. 10. 1 정병국·강명순·고승덕·김정권· 유성엽·신상진·배영식·조승수·조윤선· 이시종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 (2009. 7. 16 김재균·최철국·강창일·김재윤· 주승용·강기정·송민순·장세환·박은수· 양승조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수성 의원 대표 발의)

(2010. 4. 12 정수성·심대평·이진삼·정갑윤· 장제원·송영선·정해걸·김을동·이인기· 서상기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길 의원 대표 발의)

(2010. 3. 16 권영길·최재성·이정희·곽정숙· 홍희덕·강기갑·김영진·유성엽·이찬열· 최문순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 의원 대표 발의)

(2008. 12. 9 김충환·이한성·권영세·송민순· 유성엽·임동규·홍일표·진영·이주영· 주성영·박상돈·박보환·김성수·김성곤· 홍정욱·이시종·이인기·김용구·정미경· 안상수·정영희·정하균·노영민·이경재· 김성순·이범관·강용석·김효재·공성진· 김정훈·이명수·김기현·백재현·유일호· 이병석·안홍준·주호영·최구식·진성호· 김용태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대표발의) (2008. 10. 6 진영·송민순·이인기·원희룡·황영철·이상민·안상수·권영진·고승덕·정영희·홍일표·이범래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 발의)

(2008. 11. 17 김영록·최규성·최인기·김영진· 이낙연·유성엽·백재현·우윤근·강운태· 이용섭·이윤석·김성곤·김동철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 의원 대표 발의)

(2009. 5. 19 주성영·박종근·서상기·이한성· 유승민·강석호·성윤환·김성조·이성현· 정두언 의원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2011. 8. 1 홍일표·이윤성·신학용·이경재· 이상권·조진형·박상은·노철래·이학재· 정영희·윤상일 의원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현기환 의원 대표발의)

(2011. 7. 22 현기환·김무성·강길부·정영희· 박대해·이한성·권영진·홍사덕·김태원· 서병수 의원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2011. 9. 21 조배숙·장세환·박은수·전혜숙· 김춘진·오제세·신건·송민순·최규성· 김성곤 의원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백성운 의원 대표발의)

(2011. 10. 7 백성운·신영수·안홍준·전여옥· 정희수·허천·박기춘·유선호·김정권·

정의화 의원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

(2011. 11. 3 권경석·배영식·김태원·신지호· 안효대 · 이정선 · 최구식 · 강길부 · 손숙미 · 안홍준 의원 발의)

(이상 14건 폐기하기로 의결) 이상 14건 기획재정위원장 보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08. 12. 22 한선교·구본철·성윤환·조전혁· 김을동 · 현기화 · 정병국 · 유기준 · 이명규 · 안형환 의원 발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김창수 의원 대표발의)

(2009. 9. 25 김창수·권선택·김용구·류근찬· 박상돈 · 송광호 · 이명수 · 이인제 · 이재선 · 이진삼 · 임영호 발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진성호 의원 대표발의)

(2009. 11. 3 진성호·조문환·황영철·이종혁· 조전혁 · 정옥임 · 김성태 · 장제원 · 권영진 · 신성범·김용태·현경병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2008. 12. 16 이정현·홍사덕·성윤환·진성호· 김금래 · 정영희 · 임두성 · 한선교 · 구본철 · 김성수·최구식 의원 발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2009. 12. 14 전병헌·김재균·김부겸·조영택· 변재일 · 박은수 · 서갑원 · 강기정 · 백재현 · 박주선 · 양승조 · 박기춘 · 조배숙 · 박영선 · 우제창 · 최철국 · 주승용 · 우윤근 · 노영민 · 김재윤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경 의원 대표발의) (2009. 7. 9 이용경·김재윤·우제창·백재현· 김영록·홍영표·박은수·전혜숙·유성엽· 유원일·문국현·김영진 의원 발의)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경 의원 대표발의)

(2009. 12 4 이용경·정수성·김을동·김창수· 유원일 · 노철래 · 이상민 · 송영선 · 유성엽 · 김정·김춘진 의원 발의)

(이상 7건 페기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7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조용환) 선출안

(2011. 6. 10 의장 제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2012년 2월 9일 헌법재판소재판관(조용화) 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 **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 의원 대표발의)

(2011. 11. 16 권선택·류근찬·김창수·변웅전· 박선영 · 임영호 · 배영식 · 심대평 · 김낙성 · 이재선 · 이명수 · 김용구 · 이진삼 의원 발의) 2012년 1월 27일 발의자 철회 요구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 발의)

(2011. 12. 29 유성엽·황영철·강창일·김춘진· 김용구 · 김우남 · 김성수 · 안민석 · 신건 · 오제세 · 정병국 · 이상민 의원 발의) 2012년 2월 3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공직선거법」개정에 관한 청원

(2012. 1. 30 부산 북구 덕천2동 417-26 정백수 외 90인으로부터 박민식 의원의 소개로 제출) 1월 31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청원 심사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입법에 관한 청원

(2011. 6. 10 서울 도봉구 창4동 동도센트리 움아파트 101동 1101호 언론개혁시민연대 사 무총장 조준상으로부터 김재윤 의원 외 5인 의 소개로 제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보고

○서면답변서 제출

서울시장 박원순의 아들에 대한 병역의혹관련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2. 2. 1 정부 제출)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통지

중앙당 흡수합당 등록 통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통지가 있었음

존속하는 정당	흡수되는 정당	합당 연월일
한나라당	미래희망연대	2012. 2. 6